

의안검토보고

| | | |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|
| 의안 번호 | 제124호 | | |
| 건 명 | 서울특별시서초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개정(안) | | |
| 제안(출)자 | 서초구청장 | 제안(출)년월일 | 1997.11.24 |
| 검토위원명 | 전문위원 윤복영 | | |

1. 검토내용

- 동일 건물안에 법정동을 달리한 지번이 양재동 23번지와 서초동 257-1, 257-4, 257-6, 1748-54로 분할되어 있어,
- 동일 건물의 관할 구역 구분으로 인한 동행정 및 세무행정 등의 비 능률을 해소하고자 1개동의 관할구역으로하여(서초동→양재동) 동경 계를 명확히 확정하려는 것임.

2. 검토결과

- 동건은 지방자치법 제4조2항에 의거 의안번호 제80호('97. 1.15)로 구의회 의견청취시 찬성하였던 안건이며,
- 지방자치법 제4조3항에 의거 '97. 9.30 서울특별시에서 자치구의 법 정동간 경계변경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,
- 동일 건물안에 법정동을 달리한 지번이 2개로 분할(양재동, 서초동) 되어 있는 것을 행정업무의 비능률을 초래하므로 관할구역의 변경 을 확정하여 동경계를 명확히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3. 관련법규

<지방자치법 4조2항3항>

제4항(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·분합할 때에는 법률로써 정하되, 시·군 및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폐지·분합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(이하“지방의회”라 한다)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- ③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,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·분합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<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4조제10항제24호>

제24조(내무부소관)

제10항 : 내무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서울특별시장, 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.

제24호 : 지방자치법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구가 아닌 구간 및 읍·면·동간의 구역변경승인